

검 토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64 호 |
|----------|--------|

2017. 9. 25.

| | | | |
|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|
| 건 명 |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(문화예술과) | | |
| 제안 및 제출자 | 논산시장 | 제안연월일 | 2017. 9. 8. |
| 소 관 위 원 회 | 행정자치위원회 | 회부연월일 | 2017. 9. 8. |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위탁시설(사무)
 - ▶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
- 위탁기간: 2018년 ~ 2020년(3년간)
- 소요인원: 20명 (사무인력: 2명, 시설관리: 18명)
- 소요비용: 800,000천원
 -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
- 위탁근거
 -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□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돈암서원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

-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, 기술축적 및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의 양적·질적 개선 등을 고려하여 돈암서원 한옥마을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
- 시 직영과 민간위탁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로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
-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」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